

# ‘영향받는 자’의 권리

## : 인공지능에 대한 인권기반접근

### 장여경 정보인권연구소 상임이사와의 대담

일시 : 2026년 1월 5일

장소 : 정보인권연구소

김성이\*

#### 초록

이 글은 2026년 1월부터 인공지능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인공지능에 대한 바람직한 법제도적 접근 방안을 알아보기 위하여 정보인권연구소 장여경 상임이사와 나눈 인터뷰이다. 인공지능기본법 입법과정은 과기부와 산업계의 주도로 급속히 진행되며, 정보인권전문가 및 시민사회와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한국 인공지능기본법의 가장 큰 문제는 AI를 직접 사용하는 병원이나 기업 등 이용자를 면책시킨 점이다.

인공지능에 대한 인권기반접근의 핵심은 ‘영향받는 자(affected person)’ 개념이다. 이는 AI 개발자나 이용자를 넘어, AI 시스템의 영향을 실제로 받는 사람들(예: 암 진단 도구를 적용받는 환자, AI 채용 대상자)을 권리 주체로 설정하는 것이다. 인권기반접근은 세 가지 층위의 권리화를 제안한다. 첫째, 데이터에 대한 권리로서 AI학습 사실에 대한 알 권리와 옵트아웃 권리, 둘째, 알고리즘에 대해 설명받을 권리와 기업의 문서화 의무, 규제기관의 조사권, 셋째, 분야별 장기적 영향에 대한 권리가 바로 그것이다.

실효성 있는 인권영향평가를 위해서는 영향받는 사람들의 민주적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며, 산업적 관점에서 주도하는 부처 단독이 아닌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입이 필수적이다. 또한 빅테크 기업의 권력 구조에 대응하기 위해 분야를 넘어선 시민사회 연대와 독립적 연구 환경 구축이 시급하다.

**주요 용어:** 인공지능기본법, 인공지능에 대한 인권기반접근, 인권영향평가, 영향받는 자, 플랫폼 노동법

\* 시민건강연구소 (E-mail: seongyikim@health.re.kr)

---

## 사회적 문제로서 인공지능의 대두

김성이(이하 김): 정보인권연구소에서 2025년 11월에 펴낸 신 「인공지능에 대한 인권기반접근」을 매우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정보인권연구소는 어떻게 인공지능 문제에 개입하게 되었나요?

장여경(이하 장): 이루다 사건<sup>1</sup>이 계기였습니다. 당시 저희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민원을 냈는데, 이루다가 인간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되었어요. 마치 효율<sup>2</sup> 같은 제품 결함을 소비자에게 신고했더니 인간이 아니라고 거절당한 것과 같았죠. 정보인권연구소는 이를 계기로 인권위가 인공지능에 대한 입장을 가져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인권위는 연구용역을 거쳐 권고를 내게 됩니다. 처음에는 ChatGPT가 나오기 전에 ‘인공지능 인권 가이드라인’을 발표했고, 이후 대규모 언어 모델이 확산되면서 정책적 개입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저희는 해외 모범 사례를 연구하는데, 유럽에서 인공지능 인권영향평가를 시도하는 것을 보고 인권위가 공공기관 인권영향평가를 해왔던 경험을 인공지능 분야에도 적용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인공지능이 확대되기 전에 3D 프린터라든지 클라우드 기술이라든지 여러 첨단 IT 기술이 나왔지만, 인공지능은 질적으로 다르다는 판단을 하면서 정보인권연구소는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정책을 생산하는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김: 인공지능이 무척 빠른 속도로 사회 여러 분야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와 우려가 매우 큰 상황입니다. 한국에서는 2026년 1월 22일 인공지능기본법이 시행되는데, 인공지능기본법 제정 과정은 어땠나요?

장: 과기부가 엄청난 리더십으로 너무 빠르게 추진했습니다. 인공지능 분야에서 독립 연구나 시민사회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어려움인데, 산업계와 엘리트 관료 조직이 리더십을 독점하면서 정책 추진이 불투명해집니다. 그에 대응하는 전문 역량은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 사회적 토론도 없이 일방적으로 정책이 추진되는 것이죠. 인공지능의 잠재적 위험에 대한 검증 없이 도입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2019년 서울대에서 개최한 인공지능 관련 한 학술대회<sup>3</sup>에서 구글 관계자가 ‘암 진단 도구의 정확성을 원하면 투명성을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산업계는 투명성과 정확성은 ‘트레이드오프 관계’라는 주장을 계속해왔어요. 이런 논리가 유럽연합 인공지능법을 둘러싸고서도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기술력과 로비력을 상대하기가 쉽지 않죠.

김: 과기부가 주도하는 빠른 속도전 외에 입법 과정에서의 또 다른 특징은 무엇이 있었나요?

장: 21대 국회에서 시민사회는 ‘우선 허용 사후 규제’

---

1 ‘이루다’는 2020년 12월 AI 스타트업 스캐터랩이 출시한 ‘20세 여대생’ 콘셉트의 인공지능 챗봇으로 출시 2주 만에 약 75만 명의 사용자를 확보하며 큰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곧 개인정보침해와 혐오발언 문제가 제기되면서 출시 20여 일 만에 서비스를 잠정 중단했다. 개인정보침해 관련 사안으로는 약 60만 명의 카카오톡 대화 문장 무단 사용, 실제 20대 여성의 카카오톡 대화 약 1억 건을 AI 학습에 활용, 14세 미만 아동 20여만 명의 개인정보를 보호자 동의 없이 수집, ‘텍스트앳’과 ‘연애의 과학’ 앱 이용자로부터 수집한 카카오톡 대화를 이루다 개발에 이용하면서 개인정보를 삭제하거나 암호화하지 않은 것 등이다. 또한 게이, 레즈비언에 대한 성차별적 표현, 장애인 비하, 흑인에 대한 혐오 차별적 발언 등을 드러냈다. 2021년 4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과 과태료 부과 및 시정조치를 명령했고, 2025년 8월 법원이 개인정보 무단 이용 피해자들에게 위자료 배상을 명령하는 첫 법적 배상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은 AI기술기업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처리를 제제한 첫 사례였다.

2 ‘효돌’은 (주)효돌에서 2018년 개발한 ‘7살 손주’ 콘셉트의 ChatGPT 기반의 2세대 인공지능 AI 돌봄 로봇이다. 업체에 따르면, 2022년 10월 현재 254개 지자체 중 118곳(46.6%)에 5,800대가 보급되었고, 3년간(2020~2022) 노인돌봄기관 300여 곳에서 효돌을 활용해 비대면으로 수집한 데이터가 2억 4,000여 건이라고 한다.

3 2019년 8월 2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대 인공지능정책 이니셔티브 국제학술대회, “미래를 향한 인공지능 정책: 우리는 AI를 신뢰할 수 있을까?”

독소조항을 저지하고 인권영향평가 도입을 요구했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습니다. 22대 국회가 5월 30일 개원하자마자 시민사회는 여름 내내 대안입법안을 마련해 8월에 발의를 준비했는데, 이미 19개 법안이 발의된 상태였어요. 대부분 심사소위 의원들이 발의한 것으로, 조항이 조금씩만 다른 법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21대 국회의 보험업법 때 산업계가 유사한 행태를 보였던 로비 패턴입니다. 당시에도 한두 개 조항만 다른 여러 개 법안이 상임위 의원들에 의해 발의되었는데, 플랜 B 플랜 C를 준비해둔 로비 전략이었죠. 인공지능기본법은 무려 19개 법안이 제안되었다가 병합되어 11월에 심사해서 2024년 12월 탄핵 와중에 통과되었습니다. 비상계엄 이후 대통령 탄핵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두고 국회가 엄청 싸우던 때였는데, 법안이 통과된 것을 보면 이 로비력과 권력관계를 저희가 상대할 수 없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도 성과는 있었습니다. ‘우선 허용 사후 규제’ 조항을 간신히 뺐고, 인권영향평가가 ‘영향평가’라는 제목으로 들어갔으며, ‘영향받는 자’ 개념이 정의 조항에 포함되었습니다. 문제의식이 깊지 않은 상태로 입법을 하다 보니까 ‘영향받는 자’를 어떻게 보호한다는 구체적 보호 조항은 없지만 정의와 기본 원칙에 들어간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 개념이 인공지능 환경에서 권리 주체 보호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 인공지능에 대한 인권기반접근

**김: 인공지능에 대한 인권기반접근은 어떤 배경에서 나온 개념인가요?**

장: 유럽연합 인공지능법 입법 과정에서 시민사회가 인권기반접근(Human Rights-based Approach)을 지속적으로 요구한 결과, 초안과 최종안이 달라졌습니다. 최종안에는 기본권영향평가와 구제 챕터가 생겼고, 노동조합

이 직장 내 인공지능 도입에 대해 알림을 받을 권리가 단일 조항으로 들어갔습니다. 인권기반접근의 핵심은 기업의 책임입니다. 사전에는 주의 의무를 다해 위험성이 발견되면 조치를 취해야 하고, 사후에 피해가 발생하면 구제해야 합니다. 이는 1990년대와 2000년대 신자유주의 세계화 이후 다국적 기업의 책임을 묻기 위해 개발된 ‘기업과 인권’ 개념에서 발전했습니다. 처음에는 법률로 강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업들도 마치 상징적인 책무인 것처럼 간주하다가 유럽 시민사회가 UN과 OECD에 지속적으로 요구한 결과, 2011년 국제 규범이 만들어졌고 2020년대 들어 유럽에서 인권실사법이 법제화되었습니다.

**김: 인공지능에 대한 인권기반접근과 기본권 접근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장: 기본권은 헌법에 명시된 권리를 말하고, 인권은 더 폭넓은 개념입니다. 신규 분야 인권을 주장할 때는 국제인권규범에 근거하여 ‘인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알고리즘으로부터 영향받는 사람의 권리’처럼 아직 기본권으로 인정되지 않은 권리를 다룰 때 인권에 기반한 접근이라고 표현합니다.

**김: 유럽에서는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 완화 압력이 어떻게 작동하나요?**

장: 6월에 유럽 시민단체를 만났을 때, 그쪽도 속도가 너무 빨라 어안이 병병하다고 했습니다. GDPR(유럽연합 일반 데이터 보호 규칙)이나 인공지능법은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내용이 일부 반영되는 성과가 있었는데, 집행위원회가 최근 유럽연합이 ‘디지털 옴니버스법’이라는 규제 완화 법률 세트를 발표해 충격을 받고 있다고 했어요. 규제 완화가 먼저 환경 분야에 적용되더니 두 번째로 디지털 분야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분야를 넘어선 연대

---

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더군요. 정보인권연구소도 같은 문제의식으로 영역을 교차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영향받는 자들이 영역별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 ‘영향받는 자’에 대한 보호

**김: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영향받는 자’ 개념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겠어요?**

장: AI 개발 구조를 설명하자면, IBM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글로벌기업이 범용 AI를 개발하고(범용 AI 사업자), KT 같은 기업이 이를 사서 국내 시장에 맞게 가공합니다(다운스트림 사업자). 이것을 개별 병원이 도입하면 병원이 이용자(USER)가 됩니다. 기존 개념으로는 여기까지만 있는데, 인권 규범에서 중요한 것은 그 영향을 받는 사람, 즉 AI가 병원에 도입되었다면 바로 환자가 중요한 주체입니다. 환자는 인공지능에 의해 수술 여부나 입원 순서를 결정당하는 대상입니다. 이들이 바로 ‘영향받는 자(affected person/people/individual)’입니다. 이 개념을 한국에 소개하는 것 자체가 이들에게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기에 매우 중요합니다. 병원은 여러 AI 제품 중 어떤 것이 좋은지만 판단하지, 적용 대상이 되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그들에게 어떤 권리가 있는지는 적극적으로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보인권연구소는 ‘영향받는 자’ 개념을 알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김: 그렇다면 ‘영향받는 자’는 ‘피해자’ 개념과 어떻게 다른가요?**

장: 기존의 손해배상법리나 법적 대응에서는 ‘피해자(victim)’ 개념을 썼는데, 피해자가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권 규범에서는 기업의 책임을 사전적 예방 방식으로 전환하게 되었고, 아직 피

해자가 나오지 않은 잠재적 단계에서 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영향받는 개인이나 집단’으로 명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잠재적 대상이 되는 사람들에게 어떤 권리가 있는지 식별하기 시작한 거죠.

영향받는 자의 권리로는 첫째, 정보 공개 – 도입 사실과 적용 대상임을 알려야 합니다. 둘째, 의견 청취 – 자신에게 적용되는 인공지능 결과에 대해 설명을 듣고 의견을 제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권영향평가 과정에도 참여해서 의견을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거부권 – 대상자가 거부하거나 제의를 요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집합적 효과를 다루는 대규모 환경에서 개인의 거부권을 어떻게 구성할지는 남은 과제입니다.

**김: 그럼 ‘영향받는 자’ 개념으로 사람들에게 직접 AI프로그램을 적용하는 기업들의 책임을 부과하는 데 충분한 건가요?**

장: 현재 인공지능기본법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과기부 하위법령에 따르면 법적 책임이 KT(다운스트림 사업자)까지만 있고 이용자인 병원은 면책됩니다. ‘이용자는 기술을 가져다 쓰기만 했다’는 논리죠. 이것이 유럽연합법과 가장 큰 차이입니다. 유럽연합법에서는 이용자 기업도 모두 환자에게 설명할 책무가 있습니다. 또한 규제기관이 조사할 때 문서(documentation)를 제공할 의무도 있습니다. 한국법은 이런 의무를 KT까지만 적용하여, 환자가 오진으로 큰 문제를 겪어도 병원에 설명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실제 사례로, AI 채용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공공기관에 ‘왜 이 사람을 떨어뜨렸느냐’고 물으면 다른 기업에서 조달받았는데 그쪽에서 B등급이라고 했다’고만 답합니다. 유럽연합법은 이용자 기업에게도 설명 의무와 문서화 의무를 부과하지만, 한국은 모두 면책시켜 준 것이죠.

**김: 한국의 인공지능기본법이 그렇게 사람들을 보호하지 않고 있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장: 인공지능기본법은 기본법이라 규제를 거의 하지 않고, 과기부는 부처 성격상 첨단산업진흥이 주 업무이기 때문에 규제보다 진흥에 초점을 둡니다. 따라서 분야별 특별법이 필요합니다. 보건의료는 보건의료 관련, 노동은 노동 관련 특별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법이 있어야 부처가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ILO(국제노동기구)의 ‘노동자의 데이터 권리’ 보고서를 보면, GDPR 자체는 좋은 법이지만 고용 분야 특수성 측면에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다고 지적합니다. 개인정보 감독기관들이 고용 분야 특수성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ILO도 분야별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 김: 부문별 특별법 체제로 잘 대응하고 있는 사례가 있나요?

장: 유럽연합 플랫폼노동지침이 좋은 사례입니다. 이 지침은 알고리즘으로 운영되는 플랫폼산업에 대해 GDPR의 부족한 점 두 가지를 보완했는데, 첫째는 집단적 알 권리와 개입권입니다. GDPR은 개인정보주체가 대응하도록 했지만, 플랫폼 노동법은 노동자 대표나 노동조합이 집합적 권리로써 정보를 제공받고 개입할 수 있게 했습니다. 둘째는 완전자동화 의사결정에 대한 규제입니다. 프로파일링이라고 해서 사람들의 경제적 형편이나 임신 여부 등에 따라서 추론을 하는데, 이런 추론에 몇 가지 문제가 있죠. 암 진단 AI나 채용 AI의 추론이 부정확할 때 피해가 엄청난데, 그건 불투명성 때문이죠. 기업들이 영업비밀을 이유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측면도 있고, 딥러닝 모델 자체가 구조적으로 불투명한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추론이 불투명한데 적용이 된다는 차원에서 법률적 난점이 있기 때문에 GDPR은 ‘완전 자동화’라는 요건을 엄격하게 설정해 사람이 조금이라도 개입하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플랫폼법은 ‘완전’이라는 표현을 빼서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실제 사례로, 우버와 올라의 노동자들이 알고리즘의

부당한 점수 부여와 업무 할당에 대해 소송했는데, 완전 자동화 결정을 내린 올라에는 GDPR 22조를 적용하고, 완전 자동화되지 않은 결정을 쓴 경우에는 15조를 적용했습니다. 15조는 설명 의무가 없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죠. 이런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유럽연합 차원의 플랫폼법이 만들어졌고, 스페인은 독자적인 라이더법을 입법했습니다. ILO는 플랫폼노동 관련 법률이 인공지능 시대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 김: 현실에서는 개인이 동의를 거부하면 사실상 서비스 이용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노동자가 문제를 제기하면 아예 해고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의와 거부권의 실효성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까요?

장: 동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시민사회와 규제 기관의 노력으로 민감 정보는 별도 동의하게 하고, 포괄 동의에서 빼내야 할 부분을 분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인공지능 학습을 별도 동의 대상으로 빼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는 모두 포괄 동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인공지능이 대규모 학습을 하기 때문에 개인별 사전 동의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기업들은 박근혜 정부 때부터 사전 동의를 사후 동의로 바꾸려고 노력했지만, 정보인권운동의 저항으로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역설적으로 미국에서는 개인정보보호가 약했지만, 인공지능 환경에서 ‘옵트아웃(opt-out)’ 권리 요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들이 AI 생성 이미지로 일자리를 위협받자 자신들의 작품을 학습 데이터에서 제외해달라고 요구한 것이죠. 2024년 10월 캘리포니아에서 인공지능법 입법 논쟁이 있었는데, 투명성 공개와 옵트아웃 권리가 가장 첨예한 쟁점이었습니다. 투명성은 통과되었지만 옵트아웃은 기업들의 강력한 반발로 무산되었어요. 옵트아웃 권리는 계속 연구하고 발전시켜야 할 과제입니다.

---

**김: 한국에서 인권영향평가가 요식행위가 아니라 실효성을 갖  
추기 위해 우선 무엇이 필요할까요?**

장: 인권영향평가 제도는 없지만, 법적 근거 없이 시행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경영’ 항목을 넣도록 요구해 문재인 정부 때 도입되었습니다. 법적 규제는 아니지만 공기업들이 적용하기 시작했죠. 다른 한 축은 민간기업인데, 민간기업에 대해서는 유럽의 인권실사법을 적용하라는 해외투자자들의 요구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한국거래소에서 자체적으로 규정을 만들기 시작한 거죠. 문재인 정부에서 2025년 상장기업 전체 의무화를 계획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후퇴했어요.

유럽연합의 인권영향평가 연구를 보면 실효성의 핵심은 영향받는 사람들이 평가 과정에 참가하고 의견을 내는 것입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와 수용 여부를 완화(mitigation) 정책으로 반영하도록 권고합니다. 우리는 한국에서도 그렇게 하고 싶어서 인공지능영역에 인권영향평가를 처음 도입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기부가 인권영향평가 예산과 인원을 독점하고, 산하 공공기관에 업무를 주면서 인권위를 소외시킨다는 점입니다. 인권위가 국가인권정책 전담기관인데도 전혀 개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기부는 기술부처라 보안 위협이나 기술안전성은 잘 다루지만, 인권영향평가는 인권위가 반드시 개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과기부가 발표한 하위법령 초안을 보면, 평가할 인권을 개인정보보호 같은 자유권이나 차별 등으로만 한정하고 있습니다. 노동권이나 건강권 같은 사회권은 소관 부처가 아니라서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2026년 1월 22일부터 인공지능기본법이 시행되는데, 실질화하려면 영향받는 사람들의 민주적 참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김: 건강 분야에서 주목해야 할 인공지능 관련 쟁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장: 돌봄 로봇이 좋은 예입니다. 투약 같은 의사결정은 여러 정보를 종합해서 할 수 있는데, 에이전트화될수록 위험성과 책임 소재가 복잡해집니다. 얼마나 많은 네트워크와 의사결정 단위가 누적되었는지 파악하기 어렵죠. 산업계가 말하는 ‘수용자 중심’이 바로 영향받는 사람들의 인권기반접근이어야 합니다. 돌봄 로봇으로 돌봄 노동을 전부 대체하는 것이 마치 주류인 양 얘기하는데, 어르신 당사자 권리에 미치는 영향은 고려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동청소년 AI 환경에서는 의존성과 컴패니언의 조작성이 문제입니다. 미국조차 규제 완화 흐름 속에서도 아동청소년에게 미치는 기만적 영향에는 관여하기로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노인에게 미치는 영향 분야는 아예 관심 밖입니다.

현재 돌봄 위기를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이나 돌봄의 질 향상으로 해결할 방안은 논의되지 않고 오직 돌봄 AI 산업만 얘기됩니다. 이런 방향이 영향받는 사람들에게 장기적으로 어떤 효과를 미칠지 분석이 필요한데 지금은 없습니다. 이걸 ‘대한민국 AI 행동계획’ 자체가 과기부 주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한 공무원이 지자체에서 돌봄 로봇 보급 사업에 관여했는데, 농촌 지역 노인들의 심한 사투리를 로봇이 전혀 알아듣지 못할 것이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이런 비판을 공개적으로 할 수 없다는 거죠.

## 인공지능에 대한 사회운동과 학술연구의 전략

**김: 정책의 영향받는 사람들이 민주적으로 참여하고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사회운동이 지향해온 목표이기도 합니다. 인공지능은 양극화를 가속시킬 기술이 될 것이 우려되는데, 인공지능 시대의 사회운동의 전략에서 특별히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장: 분야를 넘어선 교차적 연대가 필요합니다. 인공지

능이 사회기반기술이 되고 있고, 특히 빅테크 기업의 권력 구조에 개입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 전체의 연대가 필요합니다. 미국과 유럽 시민사회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빅테크 기업의 규모는 한 국가를 넘어설 만큼 부와 리더십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개별 국가들이 압도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빅테크 기업과 기술에 대해 사회적 통제와 개입이 가능할지를 두고 시민사회가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그 언어조차 찾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인권기반접근’으로 어젠다화하려는 것입니다. 예전처럼 개인정보 동의권 행사만 요구해서는 너무 제한적입니다. 막대한 권력과 부와 자원을 가진 구조에서 한 개인의 동의권으로 어떻게 지배적인 질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습니까? 다른 방식의 운동, 다른 방식의 언어, 다른 방식의 의제화가 필요합니다.

### 김: 구체적으로 어떤 운동이나 의제화 전략을 생각하고 계신지요?

장: 어떤 영역에 대한 인공지능기술에 대해 접근할 때 세 가지 층위의 권리화를 제안합니다. 첫째, 데이터에 대한 권리입니다. 인공지능은 데이터 기반 기술(Data-driven technology)이므로 데이터가 첫 출발입니다. 데이터 없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데이터에 대한 권리가 맨 처음으로 고민되어야 합니다. 콜센터 노동자를 예로 들면, 상담 내용을 AI가 학습한다는 사실 자체가 공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알 권리와 참여권(학습에서 제외 요구)이 있다는 것을 알고, 참여권은 아직 법적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협상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실제로 미국의 일부 노동조합은 ‘상담 내용을 개인 평가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협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둘째, 알고리즘에 대한 권리입니다. 알고리즘도 첫 번째가 알 권리에요. 채용이나 진단에 AI프로그램을 사용했다면, 채용 탈락이나 암 진단 오진에 대해 설명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소스 코드 공개는 영업 비밀 문제와 이해

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전문적 제3자나 규제기관이 개입하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기업의 문서화(documentation) 의무가 중요합니다. 이루다 사건 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만 14세 미만 데이터가 몇 명이나’고 개발회사에 물었더니 ‘모른다, 기록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기록이 없으면 규제기관이 판단할 수 없습니다. 유럽연합법은 일정 규모 이상 회사에 독립적 감사인을 두도록 하고, 사고 시 규제기관과 감사인이 모두 조사하도록 합니다. 또한 개입할 권리, 즉 알고리즘 적용 거부권과 대체 수단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셋째, 분야별 장기적 영향에 대한 권리입니다. 콜센터 AI화가 노동자를 비인격화하고 기계 속도에 맞춰 노동 강도를 강화하는 것은 데이터나 알고리즘 문제가 아니라 노동권 자체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이런 장기적 영향은 각 분야 전문가들이 파악해야 합니다. 노동 분야는 노동운동이, 건강 분야는 건강 전문가들이 잘 알기 때문입니다.

### 김: 현재 인공지능에 대한 연구들이 규모가 크고 연구자금에서 산업적 영향력이 크다 보니 독립적인 연구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비판적이고 독립적인 연구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장: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전반적으로 독립적인 연구 환경이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한국이 더 심한 것 같아요. 미국은 그래도 독립 펀드레이저들이 있습니다. ‘컬러 오브 서베일런스(The Color of Surveillance)’라는 연구는 얼굴 인식 기술이 인종 피부색에 따라 잘못 작동하는 것만 연구하는데, 이런 연구가 가능하도록 펀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최근 차별 연구나 부작용 연구가 위축되는 것도 관련 기금과 재정 환경이 축소되는 것과 관계있을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어떻게 독립 연구를 확보해갈지 계속 고민해야 하는데, 이게 장기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 The Rights of the “Affected person”

: A Human Rights–Based Approach to Artificial Intelligence

An Interview with Yeo–Kyoung Chang, Institute for Digital Rights

Seong–Yi Kim\*

## Abstract

This article is an interview with Yeo–Kyoung Chang, executive director of the Institute for Digital Rights, to find out a desirable legal and institutional approach to artificial intelligence as the Framework Act on Artificial Intelligence comes into effect in January 2026. The legislative process for the Framework Act on Artificial Intelligence is progressing rapidly, led by the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industry, and sufficient discussions have not been held with information human rights experts and civil society. The biggest problem with Korea’s Artificial Intelligence Framework Act is that it exempts users such as hospitals and companies that directly use AI.

At the heart of a human rights–based approach to AI is the concept of the “affected person.” This approach establishes those who are actually affected by AI systems (e.g., patients using cancer diagnostic tools or potential AI recruiters) as rights holders, beyond AI developers and users. This human rights–based approach proposes three layers of rights: first, the right to data, including the right to know about AI learning and the right to opt out; second, the right to receive explanations and documentation of algorithms, along with the right to regulatory investigation; and third, the right to long–term impacts across sectors. For effective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s, the democratic participation of those affected must be guaranteed. The intervention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rather than a single ministry driven by industry perspectives, is essential. Furthermore, to counter the power structures of big tech companies, cross–sectoral civil society solidarity and the establishment of an independent research environment are urgently needed.

**Keywords:** Artificial Intelligence Framework Act, Human Rights–Based Approach to AI,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 Affected person, Platform Labor Law

---

\* People’s Health Institute (seongyikim@health.re.kr)